

2021년 제주 해녀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공모안내

목적	● 지역 특화된 해녀마을 브랜드 공연 발굴과 이를 통한 지역문화의 다양성 증진 및 제주해녀 문화가치 제고		
기간	● 공모기간 : '21. 3월 30일(수) ~ 4월 19일(수) 17:59까지 / 21일간 ● 접수기간 : '21. 3월 31일(수) ~ 4월 19일(수) 17:59까지 / 20일간		
신청방법	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을 통한 온라인 접수(이메일, 방문접수 불가)		
지원신청 자격	● 제주도에 소재하거나 거점으로 활동하는 공연예술단체 (제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 가능) - 대표자, 기획자는 반드시 공모신청 시 지정되어 있어야 함, - 대표자는 고유번호증/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 총괄, 기획, 운영에 집중 - 행정인력 : 단체 내 회계처리, 이행점검 및 아카이브 지원 인력 1명 필수 포함 (행정인력은 회계 정산 유경험자 등을 채용하는 방안을 권장하며,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제외) ※ 참여인력 자격 - 일거리 창출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제외 (공연발표를 위한 일시적인 출연진은 예외) - 프로그램의 파급력을 위해 일부 출연진 도외 거주 예술인 참여 가능 - 기획자 도외활동 거주자 가능		
지원분야	● 공연예술(연극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, 다원예술)을 기본으로 한 문화예술 전 분야		
지원대상 사업	필수 프로그램	- 해녀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서치(연구, 교육, 설명회, 간담회, 멘토링, 워크숍) 및 네트워킹 등을 통한 지역의 특화된 해녀마을브랜드 공연물(융복합 프로젝트 가능) 창작 및 쇼케이스 1회(30분 이내) 실현 - 해녀문화주간(9월 3주) 전 후 공연프로그램 발표 (총 2회 발표회 의무/ 세부일정 추후 협의) - 2021년 12월 10일까지 마을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지원 ※ 마을 자체 쇼케이스(1회), 해녀문화주간 발표(1회)를 포함하여 총 2회 공연 발표 의무/ 세부일정 추후 협의 ※ 마을의 리서치 결과가 반드시 창작물에 반영되어야 함 ※ 마을의 리서치 과정은 아카이빙 보고서로 제출되어야 함	
	선택 프로그램	- 도내 해녀마을 간 교류·협력 추진 - 공연단체의 예술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(단순 공연연습 및 회의는 불인정)	
지원규모	●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(최소 7,000만원 ~ 최대 1억원 내외)		
지원방식	●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단체에 민간보조 - 실행계획서(계약서 포함)에 참여예술인별 역할, 참여기간, 일수, 비용 지급 등 필요한 세부내용 기재 → 참여자 전원 동의서 서명 날인 - 월별 아티스트피를 지급받는 기획자, 예술가인 경우 활동일지 작성(대표자 확인 서명)		
지원금 예산편성 항목	● 예산편성 가능 항목(별첨자료 <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집행항목> 참고)		
	항목	지원내용	비고
	기타직 보수	- 사업추진에 직접 관련된 전담인력 인건비	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'아티스트피' 지급 및 '서면계약서' 체결의무 /문화예술용역 계약의 경우 '예술인 고용보험' 가입의무

지원금 예산편성 항목	<table> <tr> <th data-bbox="351 168 504 199">항목</th><th data-bbox="504 168 1214 199">지원내용</th><th data-bbox="1214 168 1444 199">비고</th></tr> <tr> <td data-bbox="351 199 504 264">참여자 사례비</td><td data-bbox="504 199 1214 264">-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참여한 예술가, 기획자, 연구자 사례비 등</td><td data-bbox="1214 199 1444 264"></td></tr> <tr> <td data-bbox="351 264 504 327">일반 수송비</td><td data-bbox="504 264 1214 327">- 재료비, 제작비, 홍보비, 인쇄비, 회계검사수수료 등</td><td data-bbox="1214 264 1444 327"></td></tr> <tr> <td data-bbox="351 327 504 360">임차료</td><td data-bbox="504 327 1214 360">- 장비, 물품, 장소대관료 등</td><td data-bbox="1214 327 1444 360"></td></tr> <tr> <td data-bbox="351 360 504 423">복리 후생비</td><td data-bbox="504 360 1214 423">- 예술인고용보험료(사업자 0.8%에 한)</td><td data-bbox="1214 360 1444 423">예술인고용보험법 2020.12월 시행</td></tr> <tr> <td data-bbox="351 423 504 486">여비</td><td data-bbox="504 423 1214 486">- 사업추진관련 출장여비(교통비, 숙박비 실비 지원하되,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)</td><td data-bbox="1214 423 1444 486"></td></tr> <tr> <td data-bbox="351 486 504 600">사업 추진비</td><td data-bbox="504 486 1214 600">- 사업추진관련 회의진행비, 간담회비등 (회의결과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)</td><td data-bbox="1214 486 1444 600">회의진행비 1인 5천원 미만, 간담회비 1인 2만원 미만</td></tr> </table>			항목	지원내용	비고	참여자 사례비	-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참여한 예술가, 기획자, 연구자 사례비 등		일반 수송비	- 재료비, 제작비, 홍보비, 인쇄비, 회계검사수수료 등		임차료	- 장비, 물품, 장소대관료 등		복리 후생비	- 예술인고용보험료(사업자 0.8%에 한)	예술인고용보험법 2020.12월 시행	여비	- 사업추진관련 출장여비(교통비, 숙박비 실비 지원하되,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)		사업 추진비	- 사업추진관련 회의진행비, 간담회비등 (회의결과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)	회의진행비 1인 5천원 미만, 간담회비 1인 2만원 미만
항목	지원내용	비고																						
참여자 사례비	-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참여한 예술가, 기획자, 연구자 사례비 등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 수송비	- 재료비, 제작비, 홍보비, 인쇄비, 회계검사수수료 등																							
임차료	- 장비, 물품, 장소대관료 등																							
복리 후생비	- 예술인고용보험료(사업자 0.8%에 한)	예술인고용보험법 2020.12월 시행																						
여비	- 사업추진관련 출장여비(교통비, 숙박비 실비 지원하되,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)																							
사업 추진비	- 사업추진관련 회의진행비, 간담회비등 (회의결과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)	회의진행비 1인 5천원 미만, 간담회비 1인 2만원 미만																						
● 예산편성 불가 항목 -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운영·경상비 - 과세사업자는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불가 -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-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직접경비, 각종 수수료 ※ 신청사업 내용과 규모,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◎ 대표자 사례비는 단체운영경비성격(급여 등)의 인건비성을 제외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역할을 부여된 경우 지급 가능 - 계약체결 : 대표자 또한 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 하며, 일반과세자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와 지급대상자가 동일하여 원천징수 신고·등록이 불가하므로 대표자 사례비는 종합소득세로 신고·납부 함(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서약서 제출 필수) * 법인단체의 경우 소득세법 의거 대표자 사례비 원천세 신고·납부 ◎ 대표자와 행정인력 간 근로관계 형성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 - (계약/보험) 근로계약서 작성, 4대 보험 등 원천징수 - (임금계산/휴가) 최저임금, 가산임금, 주휴수당 등 * 상세내용은 붙임 참고, 관련 경비는 사업비 내 총당 ◎ 단체 내 근로자 관계가 성립될 경우, 행정인력과 마찬가지로 근로관계 형성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 이행 * 작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: 예술가로서 본연의 창작활동을 독립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, 대표작가 등에게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불가 사업	● 국고, 지방비, 영화위원회, 한국콘텐츠진흥원, 한국문학번역원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 사업 ※ 지원 선정 이후 공공지원금 수혜 내역이 확인될 시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● 정치적, 종교적 목적의 사업 ●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● 시설의 건립과 매입, 재건축 사업,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● 학내 공연, 학내 워크숍, 학위 청구전 등 ● 원작(문학, 영상물 등)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및 프로젝트																							
제출 서류	<table> <tr> <th colspan="2" data-bbox="339 1693 539 1727">구분</th><th data-bbox="539 1693 1457 1727">세부내용</th></tr> <tr> <td data-bbox="339 1727 442 2065" rowspan="3">단체</td><td data-bbox="442 1727 539 2065" rowspan="3">필수</td><td data-bbox="539 1727 1457 2065"> ① 지원신청서(지정서식 다운로드 : 재단 홈페이지) - 2021년 사업계획 및 과거 주요 활동내역 등 기재 - 최근 3년간(2018~2020년) 신청단체의 활동경력 증빙자료 (프로젝트팀인 경우 참여자의 개인 활동경력 증빙자료) ※ 주요활동내역은 안정적 사업수행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. ②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 - 고유번호증,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 ③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(자유양식, 발표 7분 이내) ※ 행정 및 서류 심의를 통해 인터뷰 심의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에 한해 개별 연락 ※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</td></tr> <tr></tr> <tr></tr> </table>			구분		세부내용	단체	필수	① 지원신청서(지정서식 다운로드 : 재단 홈페이지) - 2021년 사업계획 및 과거 주요 활동내역 등 기재 - 최근 3년간(2018~2020년) 신청단체의 활동경력 증빙자료 (프로젝트팀인 경우 참여자의 개인 활동경력 증빙자료) ※ 주요활동내역은 안정적 사업수행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. ②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 - 고유번호증,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 ③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(자유양식, 발표 7분 이내) ※ 행정 및 서류 심의를 통해 인터뷰 심의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에 한해 개별 연락 ※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															
구분		세부내용																						
단체	필수	① 지원신청서(지정서식 다운로드 : 재단 홈페이지) - 2021년 사업계획 및 과거 주요 활동내역 등 기재 - 최근 3년간(2018~2020년) 신청단체의 활동경력 증빙자료 (프로젝트팀인 경우 참여자의 개인 활동경력 증빙자료) ※ 주요활동내역은 안정적 사업수행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. ②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 - 고유번호증,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 ③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(자유양식, 발표 7분 이내) ※ 행정 및 서류 심의를 통해 인터뷰 심의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에 한해 개별 연락 ※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																						

제출서류	구분		세부내용	
	단체	선택	①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- 리뷰 스캔본, 프로그램북 스캔본, 언론 보도실적 등 - 예술단체(출연진) 활동 영상 또는 음원, 포트폴리오 (영상 파일형식 : avi, wmv / 음원 파일형식 : mp3, wav) ※ URL링크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	
지원신청 시 유의사항	●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되었을 때 심의에서 제외됨 ● 첨부파일(URL링크, 영상, 음원파일 등)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● 필수·선택 제출 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를 통해 지원신청 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(지정양식 준수 필수 / 총 용량은 100MB 까지 첨부 가능) 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의 ‘내정보방’-‘내회원정보’도 심의자료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● 지원신청서의 주관이 명확하지 않거나, 지원신청자(단체)가 주체가 아닌 경우 심의에서 제외			
선정 후 이행사항	사업수행 관련	① 사업선정 시, ● 사업 선정 후 사업주체 간(도-재단-마을-수행단체) 협약 체결 ② 교부신청 시, ● 사업계획-점검-공유 등의 과정에서 ‘총괄 모더레이터’의 자문 등 지원 예정, 선정자는 반드시 워크숍에 참여하여야 하며, 교부신청 시 이를 반영한 실행계획서 제출 ③ 사업추진 시, ● 성과관리를 위한 월별보고, 성과보고회 등 대표자, 행정인력 등은 필수 참여 ● (아카이브 구축) 전체 프로젝트 진행과정 및 성과물 등에 대한 온·오프라인 자료축적·공유·제출 - 영상 아카이브는 재단에서 통합으로 진행, 결과집 및 커뮤니티(교육) 프로그램 생산 외 반영불가 - 아카이빙을 위한 해당 사진 및 영상은 초상권, 저작권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		
	의무이행 사항	● 청렴이행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(관련 서약서 징구) 등 일반 유의사항 숙지 (관련 교육자료 제공, 대표자, 행정인력 이행 필수) ● 참여인력 전원 근로계약서 또는 서면계약서 작성 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을 통해 교부신청, 집행등록, 정산 진행 (‘21. 12월 10일 집행 마감,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)		
	기타 사항	● 코로나 19 예방관리 철저,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사업 실행		
심의절차	1차 행정심의 필수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※ 기획서, 활동증빙 자료 등 미제출 시 탈락 ※ 양식 미준수 시 탈락			
	2차 서류심의 지원신청서 전문가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※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OCR 온라인 채점			
심의절차	3차 PT(인터뷰) 심의 지원신청서 전문가 심의 기준에 따른 PT(인터뷰) 심의 ※ 행정 및 서류 심의를 통해 인터뷰 심의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			
	4차 선정자 최종 확인 중복지원여부 등 확인 타 프로젝트 중복 지원여부 등 최종 적격 확인			
심의기준	● 행정심의 결격 사유 검토 - 신청자격 미 충족, 동일 프로젝트로 중복 수혜 - 지원신청서 및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- 지원신청서 양식 미 준수(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)			

심의기준	● 심의기준		
	심의기준	내용	가중치
	계		100
	사업 실현 가능성	● 본 사업 취지를 잘 이해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? ● 사업계획을 실현 할 수 있는 역량(조직체계, 참여인력)은 갖추었는가? ● 사업운영을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?	40
	사업 우수성 및 독창성	● 사업 기획은 독창적이고 구체적인가? ● 사업수행을 통해 예상되는 사업결과와 예술적 수준은 우수한가?	40
문의	사업 기대효과	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? ● 지역문화를 위한 예술콘텐츠로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?	30
	● 시스템 관련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상담센터 : 1577-8751 ● 지원사업 관련 :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역문화팀 : 064-800-9142		